

보호위,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

1. 개인정보 침해사고시
‘전체 매출액’ 기준 과징금 3% 부과,
GDPR 수준으로 과징금 강화
2. 개인정보 형사처벌은
본인 혹은 제3자 이익목적으로
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해당
3. **개인정보 이동권**, 금융/공공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
4. 보호위가 인정하는 **안전한 국가/기관**이라면
동의없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 (GDPR 국외 이전제도)
5. 모든 기업/기관 개인정보처리자
분쟁조정시 의무대응

01



개인정보 침해사고시 '전체 매출액' 기준으로 과징금 3% 부과

- 기존 법령은 '위반행위 관련' 매출액 3% 부과
- 부과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→ 전체 기업/기관으로 확대
- GDPR 수준으로 과징금 강화
(GDPR: 2천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4% 과징금 중 높은 금액 부과)
-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

02



개인정보 형사처벌은 '본인 혹은 제3자 이익목적'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

-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
발생한 경우
개인정보처리자에게 형사처벌을 묻지 않음

03



개인정보 이동권, 금융/공공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

- 내 개인정보가 언제, 누구에게, 어디까지 이용제공되는지 스스로 결정
- 기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(신용정보법), 공공분야 데이터 이동권(전자정부법)에서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확산

04 보호위가 인정하는 안전한 국가/기관이라면 동의없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

* EU GDPR
국외이전 제도

법을 위반하여
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거나
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경우 중지명령

05 모든 기업/기관 개인정보처리자 분쟁조정 의무대응

분쟁조정시 의무적으로 응해야하는 대상을
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

PRIVACY REPORT

www.somansa.com